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자산운용기준 합리화 및 상시적 규제개혁

- 금융위는 오는 12월부터 보험사들도 고객의 자산운용을 도와주거나 직접 운용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(안)을 발표함.
 - 개정(안)에 따르면 보험사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이 겸영가능 업무로 허용됨에 따라 보험사들도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팔면서 자산운용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게 됨.
 - 또한 부동산권리보험을 허가 받은 보험사는 권리보험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기존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고 자동차 등 동산의 거래과정에서 사기나 서류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동산 권리보험도 허용됨.
- 한편, 현행 특별계정간 자산편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2010년 폐지 예정인 퇴직보험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특별계정간 자산 편·출입을 허용할 예정임.
 - 현행 규정내에서는 자산을 모두 매각하여 현금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채권가격 급락 등의 시장충격이 초래될 수 있음.
 -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단기자금 차입(콜머니)이 허용됨에 따라 여타 기관과의 콜 거래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을 덜어준다는 방침임.
- 아울러 사업비 후취방식을 도입하고 보험대리점 등록 기준의 완화,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환불 등의 기 발표된 규제개혁 과제들도 추진이 가능해짐.
 - 보험사는 현행 선취방식과 신규 도입되는 후취방식 중 선택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집수당 등 사업비를 보험료에 미리 포함하지 않고 가입자의 중도 해약이나 만기 때 공제할 수 있는 상품을 팔 수 있게 됨.
 - 특히, 사업비 후취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향상시키면서 선지급 수당을 개혁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

(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,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, 10/30)